
자동차보험 수리 時 품질인증부품 사용 업무 가이드

2025. 8.

※ 본 가이드는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품질인증부품 사용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,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입니다.

1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이란 ?

-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·품질은 동일·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,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

※ [출처]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'23.7.4.) 『내 차에 적합한 ‘품질인증부품’ 구매 간편해진다』

- 자동차 관련 법률에서 OEM부품*과 동급으로 인정**

* OEM(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) : 주문자 상표 부착품,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의 부품 납품업체가 완성차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부품

**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‘신부품’ : ①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 또는 ②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

-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OEM부품과 동등한 안전성·내구성·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가격은 OEM부품 대비 51~65% 수준으로 저렴

※ [출처]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('25.4.8.)

『품질인증부품으로 車 수리비 낮추고, 안전 높인다』

2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사용 제도 도입 배경 등

- ' 24.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관리법상 “신(新)부품”에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됨

-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' 25.2월 정부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통한 OEM부품 중심 高비용 수리구조 개선 발표*

*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('23.7.4.)

『자동차보험, 합리적 보상·보험료 개선 ... 국민 부담 낮춘다』

- ' 25.6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“신부품”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키고, 신부품中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토록 약관 개정

3 관련 규정

□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항(' 24.2.20.)

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) ⑤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2.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(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),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

□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사항(' 25.6.30.)

제1조(용어의 정의)

20. 새 부분품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(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)을 말합니다.

<별표2> 대물배상 지급 기준

항목	지급 기준
1. 수리 비용	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인정기준액 (1) 수리비 (가)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. 다만,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,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(나) 경미한 손상(*1)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

4 품질인증부품 사용 제도 시행 내용

□ (원칙) ' 25.8.16.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으로 교환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수리비용 인정

* 부품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등을 감안하여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 시 비용이 더 저렴할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

□ 다만, 정부의 연착륙 방안 발표*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 (' 25.8.16. 이후 자동차보험 신계약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)

*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('25.8.5.) 「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 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」

- 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OEM 부품으로 수리 가능
- ②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
- ③ 주요부품 등(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, 휠, 조향장치 등) 적용 제한
- ④ 품질인증부품 사용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% 지급

※ (불입) ' 25.8.16. 이후 자동차보험 수리 프로세스(참고용)

붙임 '25.8.16. 이후 자동차보험 수리 프로세스(참고용)

단 계	내 용						
1. 사고접수 및 제도 안내	○ (차주) 보험사에 사고 접수(사고내용 · 차량정보 · 연락처 등 제공) ○ (양측 보험사) 차주에게 품질인증부품 제도 시행 안내(알림톡 · SMS 등) 【품질인증부품 제도 안내 표준 문구(안)】 자동차보험 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제도가 시행됩니다. (‘25.8.16. 이후 자동차보험 신계약 또는 갱신계약) * 품질인증부품이란? 품질과 안정성이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(OEM) 부품과 동등한 수준의 제품으로 국토부 지정기관에서 인증받은 새 제품 ① 품질인증부품 사용 제도는 출고 후 5년 초과 차량 및 외장부품에 적용됩니다. ○ 단, 사용 가능한 품질인증부품이 없거나 OEM부품으로 수리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EM부품으로 수리합니다. ※ 외장부품 : 범퍼, 보닛(후드), 펜더, 트렁크리드, 도어, 백도어 ② 차주가 OEM부품 사용을 원하는 경우 OEM부품으로 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. ③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해당 OEM부품 가격의 25%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 ○ 다만, 자차 미가입인 경우로서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 ※ (예외사항) ① 경미손상인 경우 복원수리가 원칙이며,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시 지급 제외 ② 재생부품, 중고부품 파손에 따른 보상 시 지급 제외						
2. 품질인증부품 사용 의사 확인	○ (보험사*) 차주에게 품질인증부품 사용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, 소비자 선택 결과를 상대 차량 측 보험사에 공유 *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(다만, 자차 미접수 시 대물 보험사가 확인 · 공유) 【차주 결정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】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차주 결정</th><th>수리 프로세스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) OEM부품 수리 결정時</td><td>→ 기존과 동일</td></tr> <tr> <td>2) 품질인증부품 수리 결정時</td><td>→ 다음(※) 프로세스 참고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차주 결정	수리 프로세스	1) OEM부품 수리 결정時	→ 기존과 동일	2) 품질인증부품 수리 결정時	→ 다음(※) 프로세스 참고
차주 결정	수리 프로세스						
1) OEM부품 수리 결정時	→ 기존과 동일						
2) 품질인증부품 수리 결정時	→ 다음(※) 프로세스 참고						

※ 차주가 품질인증부품 수리를 선택한 경우

단 계	내 용
3. 품질인증부품 조달가능성 평가 및 평가 결과 통보	○ (차주) 사고차량 정비업체 입고 →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 → (정비업체) 사고차량 입고 사실 보험사에 안내 ○ (보상의무가 있는 보험사) ① 차주의 품질인증부품 사용 희망 사실을 정비업체에 안내 ② 정비업체로부터 품질인증부품 조달 가능성 등 확인 (보험사도 자체 화면으로 확인 가능) ※ (정비업체) KAPA Mall(*)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해당 품질인증부품 및 재고 유무 확인(카파몰 제공 매뉴얼 참조) * http://ims.kapamall.co.kr ※ 건적 프로그램에서 KAPA mall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제공 ③ 보험사, 품질인증부품 사용 가능 여부 최종 판단 (1) 조달기간, 대차료 등을 감안하여 품질인증부품 사용가능여부 판단 (2) 해당 OEM부품업체 홈페이지 및 KAPA Mall을 통해 OEM 부품 공시가격 확인 ④ 판단결과를 차주 및 정비업체에 안내 (차주에게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지급액 안내 포함) (1) 현지 사정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 불가 시 ☞ 현지 사정에 따라 OEM부품 사용이 가능함을 차주에게 안내 (2) 소비자에게 지급액 안내 이후 OEM부품 사용 희망 시 ☞ 일반적인 OEM부품 사용 절차 적용 ⑤ (쌍방 과실사고)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OEM부품 공시가격의 25% 해당액 확인 → 상대 차량 측 보험사에 통보 ○ (정비업체) 품질인증부품 조회 → 건적서 작성 및 보험사 전송 : 대다수 정비업체가 사용하는 AOS의 경우 現 보험건적 메뉴의 전송 기능을 활용

단 계	내 용				
4. 부품공급	○(정비업체) OEM 및 품질인증부품 업체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 【품질인증부품 주문 방법】 ▶ KAPA Mall 조회 시 화면에 표시된 업체로 전화 주문 ▶ 아울러, 일괄 주문 등 편리성 도모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주문 관련 별도 콜센터를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 <table> <tr> <th>국산차 부품 주문</th><th>외산차 부품 주문</th></tr> <tr> <td>1577-2322 (이카파)</td><td>031-707-0726 (파츠온)</td></tr> </table> ※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제공(향후 추가 예정) ○(부품업체) 정비업체에 부품(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) 공급 ○(보험사) 부품공급 상황 모니터링(필요시 정비·부품업체 협의 지원)	국산차 부품 주문	외산차 부품 주문	1577-2322 (이카파)	031-707-0726 (파츠온)
국산차 부품 주문	외산차 부품 주문				
1577-2322 (이카파)	031-707-0726 (파츠온)				
5. 차량수리	○(정비업체) 공급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차량 수리 ○(보험사) 수리과정 모니터링(수리현장 방문 또는 사진 확인 등)				
6. 비용청구 및 지급	○(부품업체) 부품 청구서 작성 및 보험사 송부 ○(정비업체) 수리공임 청구서 작성 및 보험사 송부 ○(보험사) 청구받은 내용에 대해 손해사정 후 차주·정비업체·부품업체 각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지급				